

## 주요 변경 내용 비교표



구분	2025년	2026년	변경 사유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도 등 현행화</li> <li>기타 문구 수정</li> </ul>	
3. 지원 대상	p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li> <li>2024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li> <li>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 대상이 되는 유·사산 임신기간 주수를 명확하게 기재</li> </ul>
5. 신청 방법	p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li> <li>※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자체 담당자가 e호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면제</li> </ul>
서식	p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u>주민등록증·가족관계등록부</u></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용 <u>주민등록증·가족관계등록부, 계좌 검증 조회</u></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내용에 계좌 검증 조회 추가</li> </ul>
	p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2] 2024년도 ○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식 2] 2026년도 ○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실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비지방비예산액 집행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li> </ul>
붙임	p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붙임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민간기관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붙임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민간기관 안내</li> <li>※ 기관별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민간기관에 사전 문의 후 이용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화</li> </ul>

## 1 목 적

-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 3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임신기간 4개월(16주)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2025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4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 (지급 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
  - \* 신청서 내 여성장애인 본인 서명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5

## 신청 방법

### 1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며, 이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2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기관(붙임3 참고)

※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해산급여 신청 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 (방문 시 구비서류)

-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 단,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온라인 신청)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정부24)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 접속(모바일 가능)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 \*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6 업무처리 절차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접수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방법(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li> <li>-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로 사이트 이용 시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li> </ul> </li> </ul> </li> <li>○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li> <li>※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필요</li> </ul> </li> </ul> </li> </ul>
	민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신청: 민간기관 직접 방문(구비서류 필요)</li> </ul> </li> <li>○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 신청서,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li> <li>※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필요</li> </ul> </li> </ul> </li> </ul>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장애인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li> <li>○ 지원 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li> </ul>
결정 및 지급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정</li> <li>○ 개별 계좌 입금(e호조)</li> </ul>

## 1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에게 [서식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 접수  
- 특히,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서식 1] 신청서 2면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개인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서명 날인 요청
- **(민간기관 방문 신청)** 민간기관에서는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에게 [서식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 접수\*  
- 특히,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서식 1] 신청서 2면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개인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서명 날인 요청  
\*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스템(<https://tma.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 '신청하기' 버튼 선택(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여성 장애인출산비용지원' 검색 → '신청하기' 버튼 선택(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인증 필요)  
\* 가족에 의한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수

## 2 대상자 자격 확인(읍·면·동)

- **(등록장애인정보)** 행복e음을 통해 등록장애인정보 확인
- **(지원 대상 확인)**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모의 정보 및 출생신고 사실 확인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증명서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 유산·사산 사실 확인

### 3 결정 및 지급(시·군·구)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검토 및 결정 후, e호조를 통해 신청 시 제출한 계좌 등으로 입금 처리

### 4 실적 등 관리·보고

- 지원 내역 및 집행 실적, 홍보 실적 관리
- 시·도는 시·군·구별 실적 취합하여 [서식 2] 작성 후 보건복지부로 반기별\* 보고  
\* 6월 말 기준 상반기 실적은 7월 말까지, 12월 말 기준 당해 연도 실적은 익년도 1월 말까지 제출

## 7

## 행정 사항

- **(누락서비스 관리 활용)** 출산 후 행정안전부 정부24시를 통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자 중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누락자들을 '행복e음 누락서비스 관리'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발굴 후 지원 신청 안내
- **(안내 및 홍보)** 시·군·구(읍·면·동)의 출생신고 접수창구 및 사회복지 상담 창구, 장애인단체 및 의료기관(산부인과 설치·운영), 보건소에 홍보물 비치 및 담당 공무원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
- **(실적 보고)**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 집행현황 및 지원인원, 기타 홍보실적 등 사업 실적을 취합하여 [서식 2] 작성 후 보건복지부로 반기별\* 보고  
\* 6월 말 기준 상반기 실적은 7월 말까지, 12월 말 기준 당해 연도 실적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
- **(부정수급 점검)** 시·도에서는 매년 상·하반기 점검결과(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실적 등)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보조사업 단위로 입력 등 관리 필요  
※ (지자체 교부 사업) 지자체 사업담당자가 부정수급 현황을 확인 및 등록  
※ 상반기의 점검결과는 9월 말까지, 12월 말 기준 당해 연도 점검결과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
- **(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과의 관계)** 본 사업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임. 따라서 지자체 자체 운영사업 중 추가비용 보전 목적 외 출산 장려목적 등을 위한 지원인 경우 가급적 사업 유지 권고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사업부서 및 읍·면·동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 계좌 검증 조회
  - 등록장애인정보 확인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서식 2] 2026년도 ○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실적

1. 보조금 집행현황 및 지원인원

(단위: 천원, 명)

구분	보조금 집행현황				배정 인원 (A)	지원 인원 (B)	지원유형				출산연도		지원율 (B/A)	장애정도		
	국비		지방비				합계 (B)	출산		유사 사산	합계 (B)	2025		2026	심한 장애	심하 지 않은 장애
	예산 액	집행 액	예산 액	집행 액				단체 아	다태 아							
시도명																

2. 기타 홍보실적(홍보 대상기관 및 인원 등 개조식 작성)

## 붙임 1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개요

###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 (개 요) 방문기관,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해 양육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16.3월~)
- (서비스내용)
  - 공통서비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KTX 다자녀 행복
    - \* '16.12월부터 통합되어 신청 가능하게 됨
  - 지자체서비스\*: 시도 출산지원금, 시군구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다자녀출산축하,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다자녀 차량용스티커 발급, 유축기 대여, 산후모유수유 교실, 5-touch 건강교실
    - \*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비스 상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 방문 신청('16.3.3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구비서류 지참)
  - 온라인 신청('17.11.30~):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신청(인증서 필요)
    - ※ '정부24(www.gov.kr)'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 '신청하기' 버튼 선택(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붙임 2 복지로 온라인 신청(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개요

### ■ 개요

- 방문 신청으로 인한 민원 불편 해소 및 주민센터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신청 개시('11.9월) 이후 복지서비스 지속 확대 시행 중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도 신청 대상에 포함('19. 11월~, '19. 12월부터 모바일로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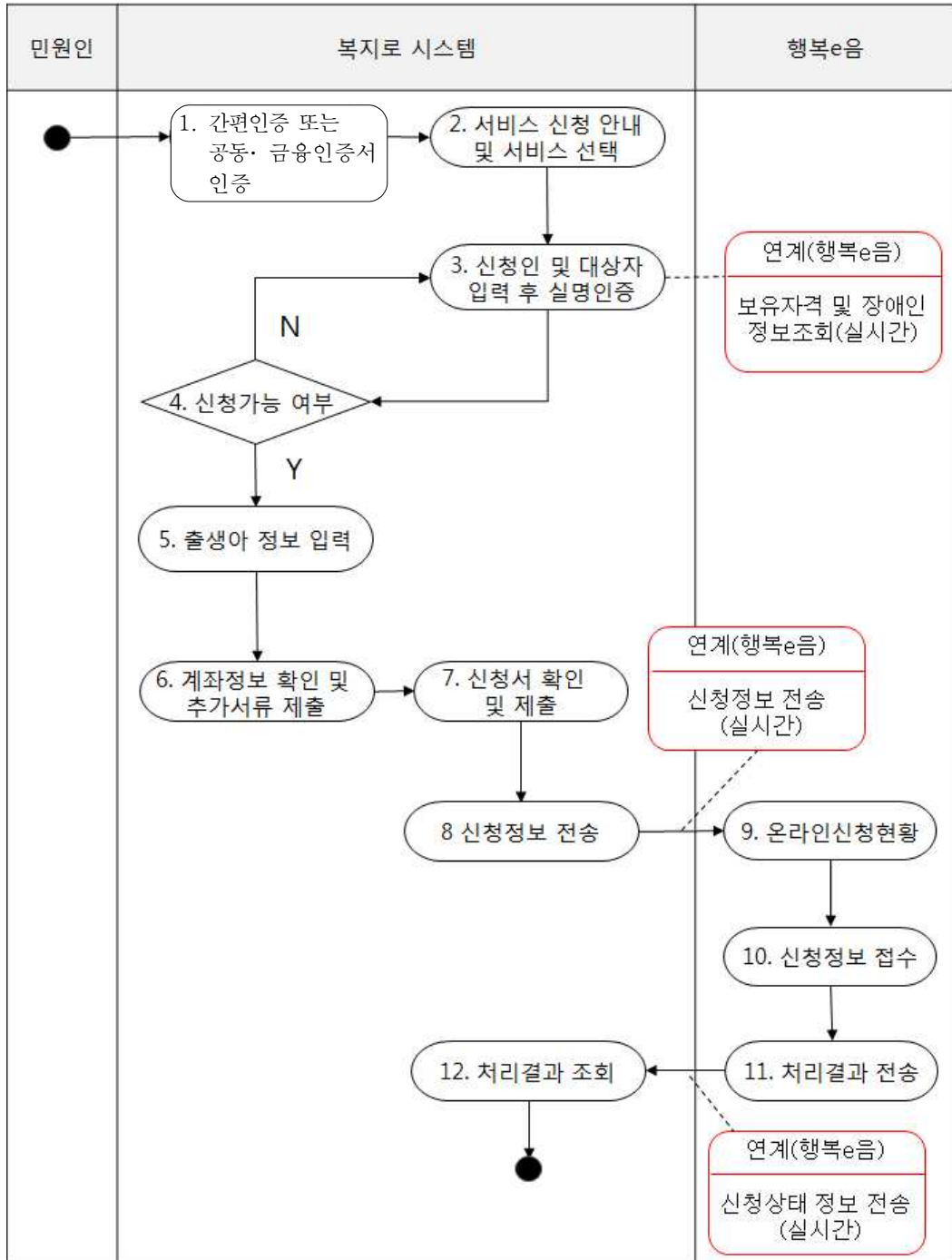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현황

구분	현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여성
선정기준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의사의 확인 또는 소견서 첨부) ※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유산, 사산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 출산, 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 온라인 신청 시 확인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신청자 범위	본인 및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세대원이 신청 가능
2	자격조회	등록장애인 여성
3	급여계좌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 단,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가능
4	첨부서류	출생아 확인을 위한 출생증명서 및 진단서 중 1개 첨부

■ 온라인 신청 흐름



### 붙임 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민간기관 안내

(2025년 6월 기준)

※ 기관별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민간기관에 사전 문의 후 이용 필요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종합사회복지관
2		금천구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3		노원구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4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
5		송파구	송파구방이복지관
6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7		용산구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8		은평구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장애인복지관
10		서구	서구장애인복지관
11		수영구	수영구장애인복지관
1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군장애인복지관
13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의료원, 창영종합사회복지관
14	광주광역시	남구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양지종합사회복지관
15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생명종합복지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판암사회복지관
16		유성구	송강사회복지관
17		중구	중촌사회복지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18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종합사회복지관
19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장래인종합복지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		평택시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21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장애인복지관
22		청주시	청주의료원,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23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장래인종합복지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2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마음건강복지관
25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종합사회복지관
26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흥덕종합사회복지관
27		성주군	성주군 종합사회복지관
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
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